

부산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542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5425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소53290 판결

###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3. 31.

판결선고 2021. 4. 2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소53290 판결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순금 열쇠 20돈 1개, 18K 반지 2.7돈(다이아몬드 5부 포함) 1개, 순금 팔지 10돈 1개를 각 인도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귀금속들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원고는, 원고 소유의 순금 열쇠 20돈 1개 및 18K 반지 2.7돈(다이아몬드 5부 포함) 1개를 10,000,000원에, 원고의 동생 C 소유의 순금 팔지 10돈 1개를 위 열쇠 및 반지의 1돈당 가격과 같이 약 3,000,000원 가량에 각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금 중 일부인 5,000,000원만 지급한 채 위 반지의 가치가 미달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귀금속들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귀금속들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영두, 판사 김상현, 판사 이은명